

●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-173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년 08월 27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

-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
-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제1항에서 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, 제29조제3항, 제29조제4항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제2항제1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서○채	1997.09.23.	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광산구 (이하생략)	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요청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등	연락두절 및 취업활동계획미수립 출석통지 2회 불응	-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-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: '26.8.27. ~ '26.9.10.

(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: 2026.9.10.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(2026.9.20.))

5. 의견제출 안내: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(5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062-712-4504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6.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한미영(☎ 062-609-86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